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용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은림,
이종태, 이종환, 최민규,
허 훈, 황철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노인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(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)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공공 체육시설(축구장)의 이용에 있어서 '만 65세 이상인 사람'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공원 체육시설(축구장) 이용료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(안 별표2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체육시설법 시행령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1. 체육시설

공원별	종 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	비 고	
			체육경기	기타행사		
공통	잔디광장	1㎡당, 2시간	20~40		•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•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•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• 축구장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 30% 할인 •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	
	일반운동장(광장)		5~10	10~20		
	축구장	잔디	120,000~156,000	300,000~390,000		
		인조잔디	55,000~82,500	110,000~143,000		
	풋살경기장	10인용	25,000~32,500			
		6인용	15,000~19,500			
	테니스장	실외	1면당, 2시간당	8,000~16,000		
		실내	1면당, 2시간당	25,000~37,500		
	파크골프장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4,000~6,000 3,000~4,000 2,000~3,000	• 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		
	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~2,000			
국궁장	1일(3시간)	2,000~4,000		•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 • 청소년·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		
	1개월	20,000~40,000				
서울대 공원	성인야구장	1일	70,000~91,000	200,000~260,000	•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•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•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•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•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	
		3시간	42,000~54,600			
	리틀야구장	1일	35,000~46,000	100,000~130,000		
		3시간	21,000~27,300		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

행

개 정 안
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 제1항 관련)
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 제1항 관련)

1. 체육시설

공 원 별	종 별	사 용 기 준	금 액(원)		비 고	
			체육 경기	기타 행사		
공 통	잔디 광장	1㎡당	20~40		-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-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2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-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 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	
	일반 운동장 (광장)	2시간	5~10	10~20		
	축 구 장	잔 디	120,000 ~ 156,000	300,000 ~ 390,000		
			55,000 ~ 82,500	110,000 ~ 143,000		
			1회	2시간		
			1회	2시간		
	풋 살 경 기 장	10인용	25,000~ 32,500			
		6인용	15,000~ 19,500			
	테 니스 장	1면당	8,000~16,000			
		2시간당				
		1면당	25,000~ 37,500			
		2시간당				
	파크 골프장	어 른 1회당	4,000~6,000 3,000~4,000 2,000~3,000		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	
		청소년 1회당				
		어린이 1회당				
		1회당				
	파크 골프장 물품 대여료	클럽 (1회당 개당)	1,000~2,000		-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 - 청소년 · 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	
	국궁장	1일(3시간)	2,000~4,000			
		1개월	20,000~ 40,000			
	국궁장	1개월	20,000~ 40,000			

1. 체육시설

공 원 별	종 별	사 용 기 준	금 액(원)		비 고	
			체육 경기	기타 행사		
공 통	잔디 광장	1㎡당	20~40		-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-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2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- 축구장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 30% 할인 -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 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	
	일반 운동장 (광장)	2시간	5~10	10~20		
	축 구 장	잔 디	120,000 ~ 156,000	300,000 ~ 390,000		
			55,000 ~ 82,500	110,000 ~ 143,000		
			1회	2시간		
			1회	2시간		
	풋 살 경 기 장	10인용	25,000~ 32,500			
		6인용	15,000~ 19,500			
	테 니스 장	1면당	8,000~16,000			
		2시간당				
		1면당	25,000~ 37,500			
		2시간당				
	파크 골프장	어 른 1회당	4,000~6,000 3,000~4,000 2,000~3,000		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	
		청소년 1회당				
		어린이 1회당				
		1회당				
	파크 골프장 물품 대여료	클럽 (1회당 개당)	1,000~2,000		-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 - 청소년 · 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	
	국궁장	1일(3시간)	2,000~4,000			
		1개월	20,000~ 40,000			
	국궁장	1개월	20,000~ 40,000			

					통해 이용할 수 있다.
서울대공원	성인 야구장	1일	70,000 ~ 91,000	200,000 ~ 260,000	-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-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
		3시간	42,000 ~ 54,600		
	리틀 야구장	1일	35,000 ~ 46,000	100,000 ~ 130,000	-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-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-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
		3시간	21,000 ~ 27,300		

					통해 이용할 수 있다.
서울대공원	성인 야구장	1일	70,000 ~ 91,000	200,000 ~ 260,000	-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-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
		3시간	42,000 ~ 54,600		
	리틀 야구장	1일	35,000 ~ 46,000	100,000 ~ 130,000	-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-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-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
		3시간	21,000 ~ 27,300		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를 개정함에 따라 세입금 감소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를 개정함에 따라 세입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- 단, 서울시 주민등록인구,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등의 통계를 토대로 대략적인 세입금 감소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[참고]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

-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제공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65세이상 서울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은 1,853,676명임
-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(2023년 9월~2024년 8월)에 따르면 70세 이상 생활체육 참여 현황은 57.7%이며, 70세 이상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은 44.2%임
 - 65세 이상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현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통계를 사용하여 추계
- 65세 이상 서울시민의 57.7%가 생활체육을 참여하고 생활체육을 참여하는 44.2%가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전제 (472,750명)
-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제공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서울시민은 총 9,602,826명임
-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서울시민(472,750명)은 총 서울시민(9,602,826명)의 약 4.9%이며 요금 감면율은 30%이므로 본 조례 시행 이후의 세입금 감소는 현재 축구장 체육시설 총 세입금¹⁾의 1.47%로 추계

1) 작성 시점 현재 공원 체육시설(축구장) 관리 담당 부서에서 자료 수합 중으로 회기 시작을 고려하여 미첨부사유서로 먼저 제공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